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6. 1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4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6월 1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선희

가. 제안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고, 정식기구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,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사업소 “마포중앙도서관” 관련 장 및 조문 신설 (안 제4장 제13조부터 제14조)
- 관계 조문 수정 (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2항제28호, 제5장제15조부터 제17조)
-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(부칙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고, 정식기구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,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관계 조문수정을 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기구에 대한 업무의 인계와 인수, 결산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